

은평구 필수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Eunpyeong-gu Labor Support Center

목 차

1. 발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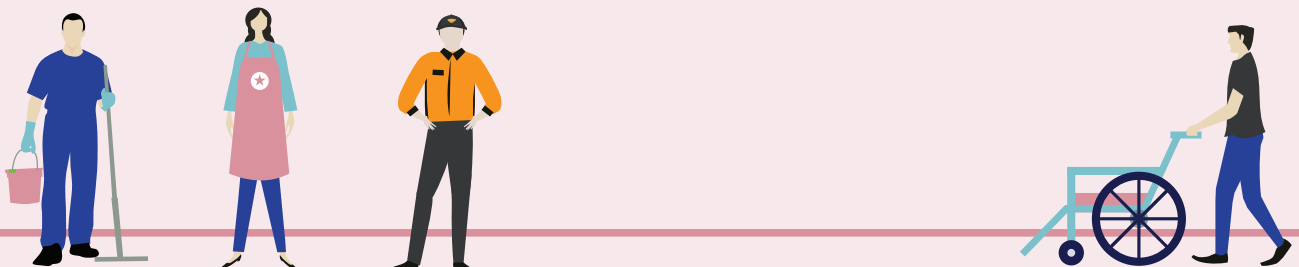
은평구 필수노동자 현황 및 노동환경실태 질적연구	5
이원희 노무사(하이에치알 노무법인)	

2. 토론문

남우근 정책위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	24
최은영 정책연구위원(서울노동권익센터)	27
은평성모병원 병원이송노동자	31

1. 발제문

- 은평구 필수노동자 현황 및 노동환경실태 질적연구
이원희 노무사(하이에치알 노무법인)



은평구필수노동자현황 및 노동환경실태 질적 연구

2021.12.16

연구배경과 목적

- 2021.4.19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동년 11.19일부터 시행
-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13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은평구는 제정되지 않음
- 필수노동자의 범위도 합의가 부재하고 선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그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못한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및 병원시설관리 중 청소 및 이송노동자에 대하여 코로나 19 상황에 근무조건과 실태를 조사
- 목적
 - 필수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범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제도적 지원상황 점검
 -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병원시설관리 청소 및 이송노동자에 대한 노동실태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
- 방법
 - 문헌조사와 해당 분야 인터뷰를 통한 질적 조사

필수노동자 관련 법률 및 조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	법률 내용
목적(제1조)	재난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정의(제2조)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필수 업무: 재난의 발생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 필수 업무 종사자: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
책무(제3조~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재난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 시책 수립 시행, 필수업무의 지속적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필수업무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 보장,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 노력 국민의 책무: 최대한 협조
법률적용(제5조)	재난 발생 시 본 법률 우선 적용, 유려한 규정은 다른 법률의 적용
위원회(제6조~8조)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지원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를 둠 심의사항: 재난의 유형, 규모에 따른 필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구성 및 운영: 위원장 1인, 15명 이하 위원,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운영: 위원장이 소집, 재적위원이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
지역위원회(제9조~10조)	지역별 위원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 차원에서 둘 수 있음 심의사항: 해당지역에 한하여 위원회와 동일 구성 및 운영: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음.
기타(제11조~)	필수업무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 제출, 실태조사 및 평가, 행정 재정적 지원, 실적우수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은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가능, 비영리기관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 가능

필수노동자 관련 법률 및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순번	법령명	지역	시행일자	부서	구성	세부내용
1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2021. 1. 7.	노동정책담당관	목적	재난발생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종사자의 보호, 지원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동구	2021. 3. 31.	노동권익센터		정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2021. 5. 6.	일자리정책과	지자체 장의 책무	
4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악구	2021. 2. 18.	일자리정책과		적용대상
5	서울특별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구	2020. 11. 10.	지역경제과	사업내용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천구	2020. 12. 31.	일자리정책과		지원위원회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노원구	2021. 3. 18.	일자리정책과	부처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2020. 12. 31.	경제진흥과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마포구	2020. 12. 31.	일자리지원과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2021. 2. 24.	일자리정책과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2020. 9. 10.	일자리정책과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북구	2021. 3. 18.	일자리정책과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천구	2021. 4. 5.	일자리정책과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2021. 9. 23.	일자리정책과		

〈표 2-2〉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현황 (2021. 10.5 현재)

〈표 2-3〉 지방자치단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구성

필수노동자 관련 법률 및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표 2-4〉 지방자치단체 필수노동자 개념정의의 비교

구분	개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강동구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서대문구, 관악구, 마포구, 동대문구, 성동구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
성북구	4. "노무제공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5. "필수노동자"란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 및 지원제도

사업장 대응 지침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

- ✓ 사업장 내 발열, 호흡기 증상자 발생시 :37.5도가 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우 재택 근무
- ✓ 확진자인 경우: 별도의 유급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가능, 무급 휴가강제시 휴업수당 지급, 감염자체로 인상 상 불이익이나 퇴사강요 등을 할 수 없음
- ✓ 백신 접종자 휴가 및 접종완료자 : 백신 접종당일,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최대한 휴가 부여(다음날 1일, 이상반응 지속시 2일)
- ✓ 코로나 19관련 노동자와 사업주 지원제도
- 고용유지 지원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 한 경우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직, 휴업으로 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구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7억)	지원수준	지원한도(7억)
일반 업종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3/4 * 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대규모) 1 일 6.6 만 원 (연 180일)	· 평균 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 일 6.6 만 원 (최대 180일)
특별 업종 고용 위기 지역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 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 1일 7 만 원 · 대규모 1일 6.6 만 원 (연 180일)	· 평균 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 일 6.6 만 원 (최대 180일)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 및 지원제도

사업장 대응 지침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

✓ 유급휴가비와 생활비 지원

-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 되는 경우 유급휴가비와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됨
-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입원 격리가 아니라 사업주의 자체 판단에 의하여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표2-6〉 코로나 관련 유급휴가 및 생활지원비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않은 자에 한함
지원수준	개인별 임금 기준 (1일 13만원상한)	긴급복지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7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관

〈그림 3-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체계도



○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및 교육과정

- (자격)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교육과정)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
 -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는 실천 II 과목 8시간을 감면
- (현장실습)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활동보조를 수행하기 전에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며, 현장실습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관

○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의 지정

- 활동지원기관에 따른 시설 기준과 인력기준을 갖추고,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및 역할

○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 근로관계 법령준수에 관한 의무(1일8시간, 1주 40시간, 1주 12시간 한도내 연장근로 가능)
-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의무(연 2회 이상 제공방법, 제공기준 등, 연1회이상 재난대응교육)

○ 유의사항

- 휴게: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자유롭게 하도록 하여야 함
- 휴일: 돌봄 노동자가 주휴, 공유일에 근로하지 않고, 유급 휴일수당 지급(근로시 2.5배),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수당지급 신청을 받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활동수당지급(이용자 확인서와 입증자료 받아 확인)

- 종사자 인건비: 급여비용중 75%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으로 사용, 가산수당 및 원거리 교통비: 해당활동지원사에게 지급, 인건비 성 경비 (4대보험 사용자부담분 등)에 한하여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관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 월한도액: 15구간 + 특례 구간으로 구분, 월한도액은 66만~6,73만원, 활동보조 급여 비용: 시간당 14,020원

분류	시간당 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020원 가산수당 1,500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1,030원 가산수당 2,250원
'관공서의 공유일에 관한 규정' D 이한 공유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1,030원 가산수당 2,2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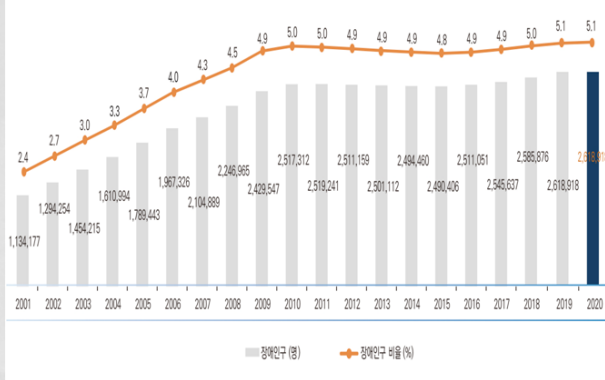
〈표 3-3〉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오그라들(關節拘縮)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가사활동지원	실내 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청소 및 주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외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사회활동지원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사수

○ 2020년 등록 장애인수 2,633,026 명
 활동지원사수 2020년 현재, 84,85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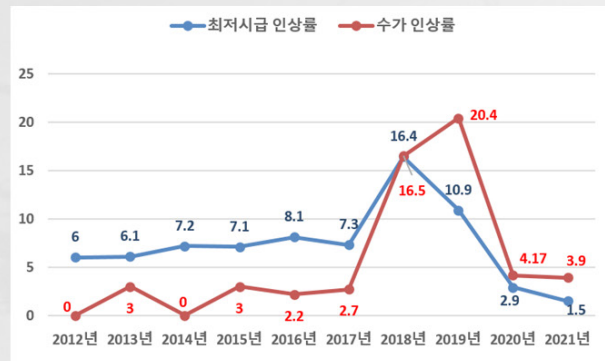


구분	활동지원사수		이용자수	월평균 지원시간	활동지원사 1인당 평균 이용자수
	등록인원	활동인원			
2011	31,234	23,653	33,667	83	1.4
2012	42,467	28,003	38,266	83	1.4
2013	67,823	40,448	48,335	110	1.2
2014	56,531	46,812	53,870	120	1.2
2015	61,366	52,761	64,523	123	1.2
2016	64,145	58,102	71,636	123	1.2
2017	68,167	62,629	72,193	123	1.2
2018	72,981	68,673	78,202	122	1.1
2019	82,448	78,044	86,730	124	1.1
2020	88,551	84,854	93,115	130	1.1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근로조건

- 성별: 여성 88%, 남성 12%, 40~60대 90.7%
- 전반적인 노동시간 : 남:150시간, 여:114시간
- 월평균 보수 : 여:1,483,825 원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바우처 수가가 16.5% 인상 but, 노동시간 대폭 축소 (2017 122H → 2018 92H)
- 2021년 시간당 수가 14,250원 활동지원사 시급 11,520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은평구 현황

- 2021년 8월 현재 제공인력수 1,264명, 제공기관: 8개
 - 장애인단체 1, 장애인 복지관 1, IL센터 3, 사회복지관 1개, 기타 1개
 - 100인 이상 사업장 4개 75%, 200인 이상 2개소 300인 이상 1개소, 교육기관 1개소
- 제도적 근거: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 은평구 사업: 장은사와 민관협력사업,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지역사회 투자사업

기존연구

- 배유진외(2020)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관리체계개편방안: 국고보조금 및 본인부담금의 명확한 근거조상신설, 인건비비율등의 준수를 제기
- 최용길외(2020) 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서비스지원센터 등의 별도공공기관 설립 제안
- 기타 연구: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근무 실태 조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실태조사 결과

- 장애인활동지원사 6명, 전담관리사 1인 인터뷰
- 구직경로 및 고용형태, 근로계약
 - “학습지 교사 하다 아이 낳고 쉬다가 동창 자녀가 장애가 있더라고요, 그를 통해서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경력도 단절되고 학습지 교사는 이동하고 스케줄 평크나면 쉽지가 않았거든요.” (C)
- 임금 및 근로조건

“1년 계약해요. 이용자가 바뀌면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해야 하고, 기관에서 본인이 원하면 대기로 해서 연결해주기도 해요.” (B)

“누구 소개는 거의 90% 그냥 해요. 믿고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없고 센터에서 소개를 하면 센터분하고 같이 면접을 가거든요. 면접, 서로가 연결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센터에서 연결해주어서 이용자분과 만나 면접을 보아요. 그리고 나면 제 이런 부분이 맘에 안들다. 또 이렇다 하나까.. 힘들더라고요..” (C)

- 노동시간 및 임금 :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소득이 결정, 최소 71~260시간까지 근무

- 임금 구조는 기본단가를 기초로 포괄임금제

M 근로계약서 중 급여 관련 조항

주간시급	심야, 공휴일 시급	가산수당 (병일, 휴일)	연차수당	유급휴일, 노동절 수당
기본급 8,720 주휴수당 1,750	기본급 13,080 주휴 1,750	1,260 1,890	51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다른 공휴일, 5.1이 속한 달에 근무한 활동지원사
10,470	14,830			

장애인 활동 지원사

실태조사 결과

○ 휴가사용

"제가 아파요. 병가 낼 수 있어요? 못내요. 이 아이한테는 매일매일 필요 한데 그러면 그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E)

○ 휴게시간 : 1:1 케어라 보장 어려움. 근로계

약서에 적시

"중간중간에 점심식사나 저녁식사 같이 하니까 쉬고 있어요. 쉬는 시간은 사실은 조금.. 이분이 쉬실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쉬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는 않죠. 같이 있으니까요." (A)

○ 교육수당 : 복지부)의무교육은 임금 지급,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노동안전 및 산재: 기관은 재정적 행정적 이유로 공상 처리함

"2~3년에 1건 정도 산재처리 해요. 집질리시거나 하는 건 기관에서 치료비 지원하는데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1년에 2건이 연속 일어난다면 조사 나와요. 조사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벌금 나오고 산재가 자동차보험 처럼 몇 년 동안 1년, 2년, 3년 동안 산재가 없으면 보험료를 할인을 해줘요."

○ 코로나 19로 인한 환경변화 :

"작년 12월에 코로나가 하루에 1000명 이상 나왔잖아요. 그 전에도 70일 정도 쉰 적 있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그때마다 코로나가 이러니 일주일 쉬자 이주일 쉬자 그게 한 달이 가고 2달이 지나니까 제가 계속 놀 수는 없으니 다른 이용자를 알아봐라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중단이 되었어요." (F)

장애인 활동 지원사

실태조사 결과

○ 코로나 19관련 안전 : 마스크 지급 50%

○ 고충과 어려움

- 불규칙한 업무 시간과 불안정 노동
- 업무상 비용지출 - 교통비, 간식비용, 유류비 발생 보장 안됨

"겨울이든 여름이든 밥 외 음료수 커피 마시잖아요. 그거 다 비용 청구하기도 어렵고, 한달에 몇 만원 되지요. 과자도 사주고 마시는 것 교통비 그렇게 하면 한달에 2~3만원 이상은 기본으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F)

○인권침해와 무리한 요구

"너무 많지요. 같이 인제 뭐 참.. 그럼데 생각하기도 싫은 건데. 가정에서 지원을 하다보면 냉장고 안에 뭐가 없어졌다고 하세요. 이진 사람의 성향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의심을 받는다 생각하면 속상하거든요." (B)

"그분은 두 달 밖에 안 했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성격이 되게 거칠었어요.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해도 가볍게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검사를 하시고 그리고 남자분이셨어요. 그리고 식사 준비를 해 놔는데 낫잠도 잘 안주무시고 그분은 제가 안마까지 해드렸어요 누워있을 때 안마하는게 쉽지가 않거든요." (C)

○ 소통의 어려움(보호자, 이용자, 기관, 동료)

"보호자랑은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못만나잖아요. 아빠를 할머니하고 상의해야 돼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빠하고 상의해야 되고" (D)

"어르신이 뇌병변 장애라 말을 못알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묻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최송하지요." (A)

장애인 활동 지원사

실태조사 결과

○ 장애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저기 장애 아이나 장애인하고 같이 갈 때 시선이 마냥 죄인처럼 취급하는 거. 아줌마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며 빨리 차에서 내리세요. 운전 기사 저는 운전기사하고도 싸워봤고. 민원도 넣어 봤고 아주 안 싸워본 사람이 없어요. 저의."(D)

○ 근로조건 관련 개선사항

- 급여인상, 고용안정 휴게시간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 휴가사용 및 대체인력 지원, 경력인정이 필요

○ 코로나 관련 개선사항

- 코로나 19로 일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 급여보장 및 고용안정의 필요성 제기
- 코로나 상황에서 이용자의 외출 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 기타 관련

- 활동지원사 간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사례 발표, 모임, 활동지원사 쉼터 마련
- 활동지원사에 대한 존중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필요
-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활동지원사 직업에 대한 인식개선

보육교사

보육정책 개관

○ 어린이집 종류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직장, 가정, 협동 어린이집이 있음

○ 영유아 반편성과 반별 정원 기준

반편성	출생일 기준	반별 정원 기준
만0세반	'20. 1. 1. 이후출생	3명
만1세반	'19. 1. 1. ~ '19. 12. 31.	5명
만2세반	'18. 1. 1. ~ '18. 12. 31.	7명
만3세반	'17. 1. 1. ~ '17. 12. 31.	15명
만4세반	'16. 1. 1. ~ '16. 12. 31.	20명
만5세반	'15. 1. 1. ~ '15. 12. 31.	20명

○ 보육시간

- 기본보육시간: 09:00~16:00, 급식1회, 간식 2회
- 등원지도 (07:30~09:00±30분),
- 하원지도시간(16:00~17:00±30분)
- 연장보육: 16:00~19:30, 야간연장보육; 19:30~24:00
- 연중무휴가원칙, 공휴일을 제외하고 임시휴원 불가

○ 어린이집운영: 보육료+ 정부보조금

보육교사

보육교사 관련

- 보육교직원: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조리사)
- 보육교사: 1~3급 자격기준에 해당되어야 가능

등급	자격 기준
보육교사1급	1.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보육교사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책정 기준 적용, 구립: 호봉제적용, 민간: 의무가 아님
- 호봉 승급: 1년마다 책정, 답입수당 30%

호봉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1	25,546,800	2,128,900	23,289,600	1,940,800	21,904,800	1,825,400
10	33,615,600	2,801,300	28,125,600	2,343,800	23,830,800	1,985,900
30	49,556,400	4,129,700	42,348,000	3,529,000	35,703,600	2,975,300

- 근무조건: 평일 8시간 원칙, 연장근무 가능
- 연장보육전담교사: 평일 4시간을 원칙
- 보육교사는 전임, 겸임불가, 보조교사나 야간 연장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 할 경우 겸임 가능

보육교사

은평구 보육교사 관련

- 2021년 9월 현재 은평구는 총 222개, 국공립 80개, 민간 90개, 가정 48개 입

구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서울	5079	1799	23	92	1181	1662	28	294
은평구	222	80	0	8	90	48	1	4

자료: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 보육교사 현황
- 전체 2,611명, 보육교사(국공립)1,090명, 가정 : 280명

구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서울	51,840	22,324	270	935	13,422	9,822	247	4,820
은평구	2,611	1,090	0	45	1,143	280	9	44

자료: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 서울시: 처우개선비 및 중식비 지원, 대체교사 지원
- 처우개선비: 원장: 195천원, 교사 및 조리원 145천원,
- 중식비: 25천원
- 대체교사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 지원, 조리원 파견 등 인건비 지원
- 은평구: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사업 진행

- 기존연구 : 보육교사 근로환경, 코로나19관련 변화된 상황,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감에 대한 연구가 있음
- 휴게시간 문제, 연차휴가, 연장근무시 별도보상 부족, 코로나19로 긴급돌봄체계 필요. 낮은보수, 돌봄 영유아 수의 문제 등이 제기

보육교사

실태조사 결과

- 보육교사 5명(구립 4명, 가정어린이집 1명), 민간, 가정어린이집 원장 2명 인터뷰 실시
- 고용형태 및 근로계약

"민간에 있을 때는 매년 계약을 썼어요 계약시점은 2월이구요. 구립으로 오면서 지금은 매년 쓰지는 않습니다."(교사 B)

"보조인력은 지원이 없으면 없어지는 직업이라 승계도 안되요. 그나마 정규교사는 승계가 되어서 계약직이라도 문제가 안되는데, 보조인력은 지원금이 없으면 바로 없어져요. 특히 방학이 되는 1~2월은 지원금이 없어서 안나오면 원장이 별도로 마련해 주던지, 아니면 정리가 돼요"(교사 D)

○ 임금 및 근로조건

- 보수: 호봉제로 근무년수별로 기본급+처우개선비+수당(행사수당, 주임수당, 아동인권담당수당 등): 220~270만원선, 민간은 다름

"민간은 경력에 관계없이 월급이 동일해요. 경력있는 분과 신입은 차이가 있는데,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경력있는 분들이 잘 대처하세요. 그런데 월급이 같은 말이 안되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 경력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교사 E)

○ 복리후생 및 수당

- 국공립: 정해져 있으나 민간은 별도 책정없으며, 원장에 따라 다름. 민간은 원장의 보수가 별도로 없어 어린이집 수입(보육료+ 정부지원금+학부모 추가지급분)에서 인건비, 식대, 교구등의 비용 공제 후 원장 월급이 책정

보육교사

실태조사 관련

- 연장근로 : 연장보육교사가 담당하여 대부분 발생하지 않음. 다만 구립은 사전에 이야기되면 지급하나 민간은 대부분 지급하지 않음

"연장수당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 연장수당을 지원해주지 않으니 연장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교사들이 당직으로 돌아가면서 해요"(원장 G)

- 휴일/휴가 : 구립은 정상 지급, 민간은 거의 사용 못함. 방학이 있으나 대부분 당직으로 출근, 병가는 거의 없음

"민간에서 연차를 써본적이 없어요. 방학때는 3일 쉬고 나머지 3일은 번갈아 가면서 나왔어요. 국공립은 대체교사가 배치되면 연차를 쓸 수 있어요."(교사 C)

- 노동안전 및 산재 : 구립은 4대보험을 들고 있으나 민간은 원장의 마인드에 따라 다름

○ 코로나 19 관련

- 업무량: 업무양태가 바뀐, 대면행사 줌으로 대체, 바깥놀이 어려워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대체, 코로나로 인한 소독업무, 식사지도, 양치지도 어려움.

"업무량은 소독관련 서류업무는 늘었고 행사나 현장학습을 못하고 외부강사 없이 줌으로 돌리거나 줌으로 하다 보니 양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학부모 행사나 크리스마스, 추석행사를 줌으로 진행했어요."(교사 C)

- 물품지원: 투명마스크 지원, 소독비 지원 but 사용법 지원이 없어 방치 중

보육교사

실태조사 관련

○애로사항

-거리두기 어려움. 영아(0~2세)문제 발생, 언어발

달 문제, 학부모의 부주의

"아이들이 마스크 쓰는 것이 영아의 경우에 어려워요. 연령별로 조금 더 상세한 지침이 있으면 좋겠어요"(교사 B)

"어머님들이 감기 기운이 있어도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지도도 지침이 있으면 좋겠어요"(교사 A)

"코로나로 인해 평소대로 양치지도와 식사지도도 할 수가 없어요. 교사당 인원수를 줄여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요"(원장 G)

○개선사항

- 근로조건 관련 : 교사 대 아동의 비율 조정,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의 확보, 교사보수수준의 향상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줄여야 밀착보육이 가능해요. 만2세의 경우 현재 7명인데 5명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시기에는 더욱 필요한 거 같아요"(교사 C)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보장이 안되요. 그리고 보육교사의 휴게실은 없어요. 휴게시간이 보장된다고 해도 휴게할 곳이 없는데 어디에서 쉬나요. 결국 일을 하게되요"(교사 A)

- 코로나관련: 영아에 대한 별도마스크 정책 고려,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방역지침 구체화, 방역 관련 전문 소독 기구 지원

- 기타 관련: 보육교사의 인권존중,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스템의 전산화를 통한 서류 업무 축소, 어린이 집 환경개선과 교구지원

병원청소 및 환자 이송 노동자

기존 연구 및 정책 관련

○ 병원산업 현황: 의사, 간호사와 70여개 직종 노동자가 일하는 노동집약적 사업장

○ 은평구의 의료기관 현황

구분	병의원	특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조산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부속병원	결핵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방의원
자치구	계												
서울시	17,916	56	126	228	8,847	57	1	1	62	4,864	60	3,611	3
은평구	677	2	7	10	321	-	1	-	1	183	2	150	-

- 공공의료기관 : 은평구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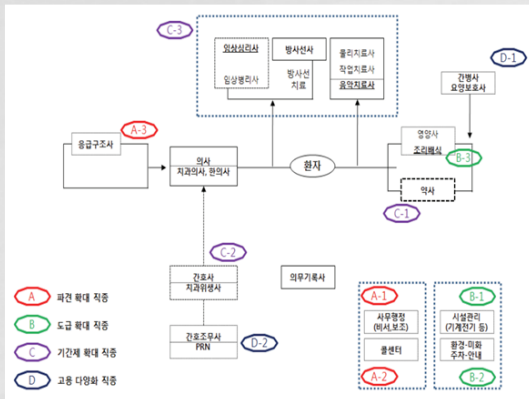
○ 병원내 직종별 외주화 실태: 2009년 보건의료노조 산하 직종별 외주화가 13.9%, 그 중에 청소노동자 99.3%, 이송노동자는 100% 외주화에 의존하고 있음

-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전환으로 국립대병원의 경비, 시설 노동자를 직접고용 했으나 다수 병원은 여전히 비정규직이 활용

병원청소 및 환자 이송 노동자

기존 연구 및 정책 관련

○ 병원의 주요 직종별 고용관계 도표



출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4),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4 재인용.

○ 병원 청소노동자 관련 주요 쟁점

- 고용불안정성과 사회복지제도 배제(노조가입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줌)
- 짧은 휴식시간과 휴게공간 부재
- 감염에 노출
- 업무적 인격적 괴롭힘

○ 이송노동자 관련

- 낮은 임금 : 240 만원 수준, 연차 사용일이 8.65일에 불과
- 환자응대의 과부하와 갈등 15.25%, 조직감시 및 모니터링 19.2%, 감정노동의 원인은 인력부족 31.9%, 고용불안 12.8%, 갈등관계 12.1%, 부당한 언행 1.3%
- 백신접종, 보호장구 및 감염정보에 대한 차별
- 업무량 과다 인권침해

병원청소 및 환자 이송 노동자

실태조사 관련(청소노동자)

○ 구직경로, 근로계약

-구청이나 신문의 구직광고, 지인소개, 용역업체 통한 1년단 위 계약

"들어올 때 1년짜리 근로계약서 썼어. 말 잘 들으면 계속 일하게 해준다 하더라고." (B)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요. 6시부터 3시까지 하고, 3시부터 7시까지 하는 두명에서 조를 짜서 일을 해요. 그리고 일요일도 해요 두 사람씩 오늘은 나하고 어떤 언니하고 근무하면 다음 또 일요일날은 그 언니하고 딱 언니하고 일을 해요. 일요일날은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고 근무하는 거는 좀 더쳐줘요. 2명에서 저녁 시간과 일요일을 해야 돼요." (A)

"4시 안 돼서 저는 와요. 제가 제일 먼저 오죠. 왜냐면 저기가 수술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 전에 다 해놔야 돼요 어쨌든 직원들이 나오기 전에 다 해야 하니까" (A)

○ 근로조건

-주 6일 근무, 주 42~51시간, 상주시간 유지하고 휴게시간 늘리는 방식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평일 오전 6시~오후 3시: 휴게 3시간 총 6시간 근무

구분	월-금(1)	토	일	월-금(2)	주당 근무시간
M	- 30시간 ·오전6시- 오후 3시 ·휴게시간 (3시간)	- 6시간 ·오전6시- 오후 3시 ·휴게시간 (3시간)	-9시간 ·오전6시- 오후7시, ·휴게시간 (4시간) 2명이 순환근무, 평균 주 2회 근무	- 3시간 ·오후 3시 - 오후 시 ·휴게시간 (1시간)	42-51 시간
N	- 35 시간 ·오전6시- 오후 3시 ·휴게시간 (2시간)	5시간 ·오전6시-12시 ·휴게시간 (1시간)	5시간 ·오전6시-12시 ·휴게시간 (1시간) ·1명이 순환근무		45-50 시간

병원청소 및 환자 이송 노동자

실태조사 관련(청소노동자)

○ 임금

-포괄임금제: 기본급+연차수당 월할분+고정연장근로수당
178만원~190만원

-추가해서 근무해도 연장 수당없음.

- 업무량이 많아 근무시간외에 추가업무를 자진해서 하고 있는 상황

"일하기 위해서 5시에 나오죠. 안 그러면 다 끝낼 수 없으니까 다 그렇게 일찍 나와야 해요.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B)

"한 층에 하나씩 박혔어요. 한 층을 다 하려면 그 시간까지 해야 돼요. 최저임금 때문에 조금 우리를 올려주고 만약에 140만원 받았다면 150만원 받게 해주고 사람을 없애버리고 8층 사람 없어요."

○ 휴가 / 휴게

- 주6일근무에 연차휴가 부재, 휴게시간 모호. 병실상황에 따라 호출하면 불려가서 휴게 보장 안됨

"1시간 30분이 쉬는 시간이라 하는데 쉬다가도 어느 층에서 어떤 환자가 뭘 어지럽혔다 어쩐다 하면은 그 층 사람은 불려가서 해야돼요. 휴게시간 없어요. 그냥 불려내요. 언제든 필요하면 불려가요."(A)

- 휴게공간은 있으나 지하 주차장, 내부시설은 법에 보장된 휴게시설미비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바닥에서 찬기가 올라오니까 매트리스를 깔 건데 침대 매트리스가 물걸물걸해서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누워야 돼요. 그거야 불편해서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A)

병원청소 및 환자 이송 노동자

실태조사 관련(청소노동자)

○노동안전 및 산재: 감염위험 상주, 정보제공 안됨, 노동의 특성상 만성적 근골격계 질환, 고강도노동(신주담기)

"격리병실에 비닐 옷을 입고 들어간다고 하지만 늘 나오면 불안하죠."

(A)

"바닥이 썩 걸 깔아 놓아 가지고 정말 가보시면 환장해요. 닦는데 걸레도 소용없고 왁스를 자주 해야 해요. 반짝반짝하는 거. 왁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20일 되면 도로 새 깔끔해져요. 왁스칠은 그게 일이 엄청 많아요. 기계로 밀어야지 닦아야지 물 퍼다 부어 닦아야지 엄청 힘든 일이 제일 힘든 일이 왁스칠 이에요. 신주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관리의 문제

-용역업체에서 청소노동자 중 반장을 두어 매개하고 있고 반장은 모두 남성이 담당, 그러나 직접 업무를 지시 받는 경우가 많음

○ 코로나 관련

- 업무량: 방역을 위한 청소횟수 증가, 업무부담 강화
- 안전: 격리병실은 자체관리, 그러나 마스크만 쓰고 함

○애로사항 및 개선점

- 고용불안, 차별과 무시, 식사시간 부재, 병원위생점검관련 관리자의 갑질, 고충처리시스템 부재

병원청소 및 환자 이송 노동자

실태 조사 관련(이송노동자)

- 구직경로 및 고용형태 근로 계약
 - 40대 후반, 남성 취업 택배 이거나 이송, 공고와 지인소개
 - 23개월 근로계약 또는 1년 단위 근로계약

"저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다니다가 구조조정 당해가지고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어디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 본의 아니게 여기가 병원이지만 처음으로 친구소개로 이쪽 일을 하게 되었어요." (C)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특별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고용에 대해 불안이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C)

- 노동시간
 - 3교대 근무, 용역업체와 병원 계약직 혼재
 - 용역업체 소속(데이, 미드, 이브닝) 주5일 40시간 월 1회 토요일근무, 휴게시간 30분 (출근을 30분 늦춤)
 - 병원계약직: 병원간호사와 동일한 3교대

- 임금 : 최저임금을 기본급+식대+ 만근수당, 197만원 정도 (용역), 230만원(계약직)
 - 노조결성후 야근수당, 토요일근무수당을 받음. 연장없음

M근로계약서중 임금구성항목

기본급	식대보조	만근수당	합계
1,822,480	100,000	54,590	1,977,170

병원청소 및 환자 이송 노동자

실태 조사 관련(이송노동자)

- 업무량
 - 노조설립이전보다 업무량 줄어듦(40~50건->35건)
 - 병원계약직은 이송외에 검체 및 약품이송, 병실지원업무 등 보조인력역할, 이송 건수: 15~20건

"데이나 이브닝 때는 약품이나 물품 타오기, 검사나 이송 있으면 수시로 하고요. 나이트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병원 위생 작업 같은 거 해요. 청소도 하고 스테이션 닦기도 하고 수액 모자라면 채워놓기도 하고 새벽에 검사받는 환자나 갑자기 통증 호소하는 환자 촬영하러 가죠. 평균 이송은 15번 정도 많게는 2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E)

- 휴가/휴게
 - 용역업체: 노조결성전에는 강제 월 1회 휴가, 결성 이후 자유로워짐
 - 휴게는 용역은 식사 30분, 계약직은 제대로 없음
 - 휴게 공간: 노조결성 이후 용역업체 마련해줌
- 병원계약직은 간호사실에 마련되어 사용어려움

"간호사실 내에 티룸이란 공간이 있었는데 눈치가 보이죠. 저희는 보조고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는 건데 눈치가 보이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쉴 시간이 없었어요. 남자니까 여자분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들어갈 수 없잖아요." (E)

"저희는 쉴 장소 자체를 아예 안 주었어요. 서 있거나 솔직히 화장실 가서 잠깐 쉬거나 앉아 있다가 나오거나 그런 식이었지요. 그래서 환자나 다른 사람이 모두 다 앉아서 쉴 수 있는 청소하는 용역업체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구간에 저희만큼은 못 쉬게 했었어요." (D)

병원청소 및 환자 이송 노동자

실태 조사 관련(이송노동자)

○ 관리시스템

- 병원상주 용역회사 현장 소장이 있음
- 이송노동 앱을 통해 업무 수행, 실시간 동선과 쉬는 시간을 감시

"가야 될 순서부터 떠 있어요. 그러면 **순서대로**(호출현황이 있음).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걸 누르고 일을 하면 이송시작을 누르면 내가 이송을 하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가게 되어있어요. 실시간으로 우리 동선이 다 확인이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파악이 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직원을 CCTV로 감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C)

○ 노동안전과 산재

- 이송노동자의 환자이송시 이송증 부착 확인후 업무 수행
- 감염관련 보호복이나 정보제공을 받지 못한 경우 있음

"이송중에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보호 장구를 갖춰 입고해야 하는데 저기에 표기가 안돼요. 이송하고 나가는데 데스크 안에서 보다 **어 그분 감염이에요. 이미 우리는 다 만났지요.**" (D)

- 병원환경상 근골격계 질환 및 사고의 위험 상존, 병원내 산재 발생시 용역업체 책임회피

"그냥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환자를 일일이 들고 중환자실 경우 배드 자체가 너무 무겁고 바퀴가 잘 안 굴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침대에 끼어 있는 기구들이 풀대에 많이 끼어 있어 힘이 들죠." (D)

병원청소 및 환자 이송 노동자

실태 조사 관련(이송노동자)

○ 코로나 19관련

- 업무량 관련: 소독, 방호복 등의 업무로 노동강도, 업무부담 강화
- 안전: 이송노동자는 용역업체에서 마스크 지급, 병원계약 직은 병원에서 받음.
- 용역업체 :정보부재로 안전은 개인책임, 불안한 노동

"코로나 환자가 병원에서 뺏다고 공지방송을 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에게 방역제품 다 입고 이송을 하라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는 병원에서 확진 접촉자 있습니다.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안 알려줘요.** 발생이 되도 그러면 저희는 모르고 일반 마스크 끼고 이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죠." (C)

○ 애로사항

-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검사, 관련 프로세스 모두 개인 연차로 대체, 휴가에 대한 보상 부재
- 병원폐쇄시 정부지원으로 급여지급

"전에 응급실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이송사원은 모르고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 사람이 확진자예요. 그때 밤에 연락이 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고 해서 받고 음성인 거 확인돼서 이틀인가 격리하고 출근한 적은 있어요. 그때 개인 연차로 잤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D)

"전에 이송요원이 감염된 적 있어요. 자가격리하고 바로 퇴사했어요. **자진퇴사로 했지만 회사에서 몰아갔겠지요.** 당연히 재계약 안해 주죠." (C)

- 저임금, 고용불안, 불명확한 업무, 책임소재 문제
-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무시

정책제언

필수노동자를 위한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에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필수업종"이란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필수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특성, 공동체유지, 주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종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필수업종의 지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산재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재 필수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직무 등의 산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생애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장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생활이주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위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정책제언

직종별 정책제언

○ 장애인 활동지원사 관련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수가체계 개선, 장애인활동지원사 업무 매뉴얼 개발, 2인 1조 필요시 바우처 수가 적용, 고용 불안해소
- 지자체 :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인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
- 은평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철저한 지도 점검, 장애인활동지원사 쉼터, 휴게공간 마련, 자조 모임, 교육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우수장애인활동지원사 표창, 장애인식 개선

○ 보육교사

- 보육아동 비율의 개선
- 외국인영유아 보육료 지원 고려
- 보육교사 휴게와 휴가의 보장을 통한 보육의 질적 제고
- 코로나 19관련 전문소독기구의 정기적 지원

정책제언

직종별 정책제언

- 청소노동자와 이송노동자
 - 직접고용
 - 휴게시설의 설치의무 주체가 병원임을 명시
 - 감염예방 및 안전에 대한 병원의 책임 강화
 - 유급 병가 및 상병 수당 도입
 - 청소, 이송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인격적 대우
 - 이송노동자 업무 매뉴얼 마련

감사합니다.

2. 토론문

- 남우근 정책위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최은영 정책연구위원(서울노동권익센터)
- 은평성모병원 병원이송노동자



1) 총평

- 보고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병원 노동자(청소, 환자이송)의 제도 현황, 노동실태, 업무 상 어려움, 코로나19 영향, 개선 의견에 대해 매우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음. 코로나19 상황만이 아니라 평상 시에 겪고 있는 노동실태 상 문제점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음.
- 보고서에서는 정책제언으로 3개 직종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 사항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했고, 적극 동의함. 필수노동자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2)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 45쪽 :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계약서 상 기간 설정의 문제점

① 근로계약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단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관의 활동지원 사업의 중단 또는 서비스 이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를 거부할 경우 또는 제공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서비스 매칭이 안되어 휴무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경우 기간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특정할 수 없는 기간('서비스 이용자의 거부', '서비스 매칭이 안 되는 경우' 등)를 계약기간으로 정한 계약서 조항은 무효임. '이용자(수급자)의 거부' 또는 '이용자 서비스 종료 시'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그 존속기간의 시간적 측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고용기간의 만료가 돌봄대상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존하게 되는 계약으로 이런 내용은 무효이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봐야 함.

- 고용노동부 역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에 대한 질의회시를 통해 '이용자(수급자)의 임종시' 또는 '이용자 서비스 종료시'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70, 2012-05-30)

- 공공서비스, 특히 민간에 의해 공급되는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의 필요성

○ 유급병가, 상병수당, 근로손실에 대한 보상

- 48쪽 : “아프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사용은 이용자와 조율하여 사용하는 구조지만 대체인력 부재는 물론 대체인력 사용 시 일자리 보장의 불확실성으로 휴가사용이 어렵고 코로나 백신접종을 맞고 몸이 아파도 바로 일터로 나가야 하는 현실임.”
- 55쪽 : “이용자가 확진되어 활동지원사가 밀착접촉자가 되어 자가격리 시 유급휴업수당으로 2주간 생활지원 급여 60%를 지급하였지만, 이용자만 격리되는 경우 2주간 일이 없게 되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부재함”
- 코로나19 등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보장이 절실함. 서울시의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유급병가지원 사업 신청 건은 총 7,191건이고, 은평구 신청건수는 367건임.¹⁾
-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근로손실에 대한 보상, 이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도 필요.

○ 보육교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 103쪽 : “민간의 경우 대체교사가 지원되지 않거나 법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며, 아예 지원을 하지 않고 당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음이 확인됨 .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된바, 박지순외(2021)의 연구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66.7%였던 것으로 확인됨”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가 제도상 문제인지, 원장의 일탈행위인지?

3) 정책제언에 대해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고용불안 문제 : 이용자 사정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 종료에 대해 현재는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임. 서비스 시간과 연동된 수가제도의 개편을 통해 상용직 고용이 가능해야 함.
- 보육교사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율이 매우 낮는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함.
- 병원 청소 및 환자이송 노동자의 간접고용 문제 : 병원이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등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사회적 규율이 필요함.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서비스 시설의 필수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당장은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법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 제정을 통해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불안을 해결해야 함.

4) 지자체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에 대해

- 은평구 조례 제정의 필요성, 필수노동자 개념을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정의할 필요성에 적극 동의함.
- 필수노동자의 개념 및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와 함께 정책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함.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각각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다르고, 추진 주체에 따라 권한과 예산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 주체별로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의 경중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

1) 정재철 외(2020),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개선방안 모색’, 서울시 공공의료보건의재단, 2020. 11.

고 봄.

- 기초지자체는 ‘개념적 필수노동자’와 ‘정책대상 필수노동자’를 구분하고, 사업의 경중을 달리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 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에도 필요함. 또한 기초지자체 고유의 권한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고용개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나 광역단체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기초지자체의 권한, 접근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서비스 공급 주체를 고려한 대상업종과 지원 방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필수업종 공급 주체별 대상 업종 및 지원 방향〉

공급 주체 (공급 책임)	주요 대상 업종	지원 방향
정부	- 국가기간산업(발전, 물류, 항공, 가스 등) -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 인력확충 - 고용 및 처우 개선 - 사회보험 확대 적용 -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공공화)
광역지자체	-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 대체인력 지원 -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집행·보조
기초지자체	- 환경미화(직영/위탁) : 생활폐기물수거, 재활용선별 등 - 돌봄노동	-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및 고용 개선 - 돌봄서비스 공급에 대한 기초지자체 권한 행사를 통해 돌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민간	- 택배, 배달, 쿠팡서비스 등 - 가전·통신 설치수리서비스 - 공동주택 노동자 - 콜센터(일부는 공공)	- 방역물품 지원 등 방역대책 우선 적용

* 남우근 외(2021), 「양천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양천구노동권익센터, 2021. 12.

은평구 필수노동자 현황 및 노동환경실태 토론회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 최은영 연구위원

1. 안전한 일상적 삶을 지켜주는 필수노동

-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노동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간호사**들은 최전방에서 방호복을 입고 밀려드는 환자를 돌봐야 하며, 확진자의 생활공간에서 사용한 물건을 수거하고 소독하는 **방역 요원**들은 감염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돌봄 종사자**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서비스 이용자와 대면접촉을 해야 하며, **택배 종사자**는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물동량이 급증하여 과로사 위험이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코로나 쓰레기로 늘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2. 국제사회의 필수노동자

- ILO - Frontline worker (최전방 노동자)
 -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종사자
- OECD - Key worker (핵심 노동자)
 - 사회기능 및 경제활동의 유지에 핵심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 Amnesty - Essential worker (필수 노동자)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 ⇒ 보건의료/돌봄, 보육, 응급, 방역, 교통·운수, 환경미화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3. 국내 필수노동자 지원 대상과 법률

-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종사자, 영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 종사자, 운송서비스 종사자, 환경미화원, 기타 업무(콜센터) 종사자
- 중앙정부는 필수노동자 대체인력 지원,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지역별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은평구 필수노동자 현황 및 노동환경실태 토론회

4.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

- 서울시는 보건·의료·돌봄, 교통·운수, 택배, 환경미화 분야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조사 시행

직업군	한국표준직업분류(소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세분류)	인원(명)
보건·의료·돌봄 (20만명)	243. 간호사	전문 간호사, 일반 간호사, 보건교사 등	57,454
	246.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응급 구조사, 위생사, 의무 기록사, 간호조무사 등	41,851
	42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및 교사 보조 서비스 종사원, 기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원	72,930
	951. 가사 및 육아도우미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29,862
교통·운수 (8만명)	873. 자동차 운전원	택시운전원, 버스운전원,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 포함)	82,154
택배 (7만명)	922. 배달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기타 배달원 등	71,084
환경미화 (16만명)	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160,995

- 서울지역 자치구 성동구,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등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조사 시행
 - 성동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돌보미, 청소, 경비원
 - 강서구: 병원시설관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마을버스 기사,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 마포구: 요양보호사, 마을버스 기사, 배달기사, 경비, 청소
 - 은평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병원 청소 및 환자 이송노동자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필수노동자 중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노동실태조사를 시행
 -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은 코로나19 이후 재활용쓰레기 배출의 증가로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대면서비스로 인해 감염, 과로 등 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음
 -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72%는 코로나19 이후 수거하는 쓰레기양이 늘었다고 응답. 44%는 코로나19 이후 청소차량의 하루 평균 이동거리가 증가했다고 응답
 -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 기준이 정해진 바 없다고 응답한 환경미화원이 80%이며, 백신 접종 당일 공가 휴가 6%, 백신 접종 당일 유급 휴가 14%
 -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호 장구는 마스크가 98%, 일회용 장갑 35%, 보호복 14%, 일회용 토시 4%
 -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감염시 치료비용 전액지원과 재난상황의 청소작업 업무 가중에 따른 보상, 생활폐기물 작업구역 내 위생시설 확대 등
-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지원정책과제

- 1단계: 긴급지원 - 감염예방, 백신휴가제, 자가격리자 폐기물 처리 지침 전달
- 2단계: 단기적 지원 - 인력 충원, 사회적 위험수당, 유급 병가
- 3단계: 중장기적 지원 - 환경공무직 수준의 보호 안전장구, 휴게시설 마련

5. 은평구 필수노동자 현황 및 노동환경실태 질적연구

- 조사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병원시설관리 및 응급환자 이송 종사자
- 조사방법
 - 필수노동자 당사자 인터뷰(장애인활동지원사 6명, 전담관리자 1명, 보육교사(원장 포함) 7명, 병원 청소노동자 2명, 이송노동자 3명)
-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제안
 - (장애인활동지원사) 은평구 장애인활동지원사(1,264명)의 휴게 공간 마련, 자조모임, 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우수 장애인활동지원사 표창 등
 - (보육교사) 은평구 보육교사(2,611명)의 보육아동 비율 개선,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1,423명) 대체인력 지원, 휴게공간 마련, 전문 소독기구의 정기적 지원
 - (병원 내 청소노동자와 이송노동자) 병원 직접고용, 실질적인 휴게시설 설치, 감염예방 및 안전에 대한 병원의 책임 강화,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도입, 청소·이송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인격적 대우

6. 은평구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 재난상황시 필수업무 대응 체계 마련
 - 파견인력 투입, 필수노동자 감염 위험 최소화 방안 마련(방역 물품 지원 등)
- 은평구 필수노동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추진
 - 필수노동자 중 저임금, 비정규직, 장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 마련
 - 사회적 위험수당 지급, 사업주 재계약 보조금 지급, 작업시간 관리 모니터링 등
 - 장애인활동지원사: 위험수당, 노동상담지원
 -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 어린이집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 병원 청소노동자: 병원 내 실질적인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작업안전물품 지원
 - 병원 이송노동자: 교통사고 비용 전액 지원
-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은평구 필수노동자들의 핵심 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

은평구 필수노동자 현황 및 노동환경실태 토론편

부록

〈그림〉 서울지역 자치구별 필수노동자 현황



각주: 1)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거주지 기준. 2) 직군별 필수노동자 비율 5%이상 자치구의 필수노동자 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2차년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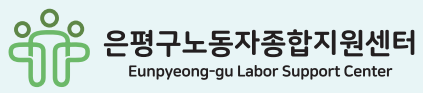
- 사업체 수 23,793개사, 종사자 수 81,943명(서울지역의 약 2%)

〈표〉 은평구 사업체 노동자 현황 (단위: 명)

연번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종사자 수	연번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종사자 수
1	소매업	11,612	16	금융업	783
2	교육 서비스업	9,297	17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82
3	육상 운송업	8,466	18	사업 지원 서비스업	505
4	사회복지 서비스업	8,406	19	전문 서비스업	444
5	보건업	4,557	20	식품 제조업	396
6	부동산업	3,342	21	숙박업	360
7	도매 및 상품 증개업	3,101	22	기타 제품 제조업	262
8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69	23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61
9	전문직별 공사업	2,750	24	출판업	199
10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122	25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9
11	협회 및 단체	1,687	26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	174
12	종합 건설업	1,123	2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50
13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844	2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48
14	보험 및 연금업	833	29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21
15	의복,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811	30	임대업; 부동산 제외	113

각주: 은평구 상위 30위 사업체 종사자 수(음식점 및 주점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9년

은평성모병원 병원이송노동자 토론회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Eunpyeong-gu Labor Support Center

